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00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변경 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김지혜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72,3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첫째 아들인 F(1988. 1.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 D은 F의 배우자이다.

① 망인은 2020. 3. 13.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2020. 3. 13. 20,000,000원, 2020. 3. 16. 25,344,672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상속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인 22,672,336원을 배상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G병원에 입원해 있던 망인을 원고 모르게 H병원으로 옮겨 원고가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고, 망인의 사망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생전인 2018. 8. 8. 자신을 돌보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피고 C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또는 피고들이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을 원고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전원시켰다거나 원고에게 고의로 망인의 사망 소식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